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토보고

행정기획위원회(지역경제과)

의안번호	187호
제 출 자	성북구청장(2023. 10. 5.)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전문위원 정 진 만

1. 제안이유

공정무역 인식 제고와 공정무역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거점시설인 성북구 공정무역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2023.12.31)에 따라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민간 재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시설명	소재지(행정동)	시설규모	(현)위탁법인	위탁기간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개관:2016. 8.)	성북구 동소문로22길 33-8(동선동1가)	· 대지면적:108.3㎡ · 연면적:77.36㎡ · 1층 교육장 2층 홍보·체험관	(주)트립티	2021.01.01.-2023.12.31 (3년)

나. 위탁기간 : 2024. 01. 01 ~ 2024. 12. 31 [1년]

다.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사 및 선정

라. 위탁사무내용

- 공정무역센터 운영 및 사업 기획
-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 추진(교육홍보·생태계 조성 등)
- 위탁 대상 관련 시설물 관리 등

3.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5조
(공정무역센터의 설치·운영)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공정무역 인식 제고 및 공정무역 소비 시장 확대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거점 시설인 성북구 공정무역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2021. 01. 01. ~ 2023. 12. 31. 3년, 주)트립터) 중이나, 2023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 성북구 공정무역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계속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¹⁾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가. 주요내용

- 성북구 동소문로22길 33-8(동선동1가, 대지 108.3㎡, 연면적 77.36㎡)에 위치한 공정무역센터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사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5조²⁾에서 규정한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

1)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제25조(공정무역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센터(이하 “공정무역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1.5.)

② 구청장은 공정무역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1.5.)

로 공개모집 하여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 1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자 하는 사항임.

나. 민간위탁의 타당성

- 공정무역센터는 공정무역 활성화 지속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공정무역 판매처 확대, 공정무역 관련 사업 발굴, 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 등 공정무역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음. 이러한 센터 운영 전반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관(官) 주도의 사업 추진으로는 민·관 자원의 결합 및 민간주체역량을 극대화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공정무역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민간 주체들의 풍부한 현장경험과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공정무역 조직의 발굴과 유기적 소통을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체계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은 타당성 있다고 사료됨.

-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 제5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신설 2016.7.14.)
 - ③ 구청장은 공정무역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1.5.)
 - ④ 제2항에 따라 공정무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5.11.5.) (개정 2020.12.31.)

다.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

- 「지방자치법」 제117조³⁾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5조제2항⁴⁾에서는 공정무역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 3)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제25조(공정무역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무역센터(이하 “공정무역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1.5.)
- ② 구청장은 공정무역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1.5.)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 제5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신설 2016.7.14.)

- 또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5)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을 법인·단체 등에 민간 위탁 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 조례’ 제5조제6호6)에 ‘공정무역’ 사무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센터는 민간위탁 사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라. 민간위탁 기간 및 선정 방식의 적정성

- 위탁기간은 ‘1년’ 으로 하고 있으며,
- 수탁기관 선정 및 모집방법에 대해서는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5조제4항7)에 따르면 ‘공정무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라고 규정되어 있

5)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6)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 6. 사회적 기업, 공정무역, 마을 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7) 제25조(공정무역센터의 설치·운영) ④ 제2항에 따라 공정무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5.11.5.) (개정 2020.12.31.)

으며,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1항⁸⁾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과 같은 조 제2항 ‘성북구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추진하려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마.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법’, ‘민간위탁 조례’ 및 ‘공정 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8)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제5조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